

2017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재

## 2017년도 상반기 결산에 따른 ○○감사 결과보고

---

2017. 9.

 감 사 실  
한국국토정보공사

# ||| 목 차 |||

<b>I. 감사실시 개요</b>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중점사항	1
<b>II. 감사대상 업무 현황</b>	2
1. 상반기 사업실적	2
2. 상반기 사업실적 비교	2
<b>III. 감사결과</b>	3
1. 총 평	3
2. 지적사항 총괄	3
3. 지적사항 요약	4
<b>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b>	4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4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5
2.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5
<b>V. 기타사항</b>	5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2017년 상반기 결산서, ○○제표, 기타 부속서류가 ○○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공사 ○○정보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및 ○○○○○○○원, ○○○○○○○원, 12개 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상태와 상반기 결산서, ○○제표, 기타 부속서류 등 각 기관 회계업무 처리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7년 8월 2일 부터 같은 해 8월 3일까지 2일간 감사실 3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4인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 하였다.

## 4. 감사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제표 및 손익계산서의 적정성 유무,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점검, 주요 계정과목 회계정책의 이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 1. 상반기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I.	사업수입	(+)	256,179
II.	사업비용	(-)	208,560
III.	사업손익(I - II)		47,619
IV.	기타수익	(+)	1,931
V.	기타비용	(-)	5,454
VI.	기타손익	(+)	269
VII.	금융수익	(+)	1,766
VIII.	금융원가	(-)	72
IX.	법인세차감전성과 (III+IV-V+VI+VII-VIII)	(+)	46,058
X.	법인세비용	(-)	9,947
XI.	당기순이익(IX-X)		36,111

### 2. 상반기 사업실적 비교

#### [2017년도 상반기 사업실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		전기		증감 금액	비고
	금액		금액			
I 사업수입		256,179		241,365	14,814	
1. 측량수수료수입	256,179		241,365			
II 사업비용		208,560		209,363	-803	
1. 업무비	177,268		181,395			
2. 관리비	31,292		27,968			
III 사업손익		47,619		32,002	15,617	
IV 기타수익		1,931		2,028	-97	
V 기타비용		5,454		5,840	-385	
1. 기술원양성비	2,419		2,561			
2. 연구사업비	2,662		3,061			
3. 기부금	130		28			
4. 잡손실	91		27			
5. 투자부동산상각비	153		163			
6. 기타의대손상각비	0					
VI 기타손익		269		1,289	-1,020	
VII 금융수익		1,766		1,456	319	
VIII 금융원가		72		8	62	
IX 법인세차감전성과		46,058		30,925	15,143	
X 법인세비용		9,947		7,481	2,466	
XI 당기순이익		36,111		23,434	12,677	

### Ⅲ. 감사결과

#### 1. 총 평

2017년 6월 30일 기준의 상반기 ○○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상반기 손익계산서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사의 ○○규정·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다만, [표 1]의 외부감사인 의견 중 본 결산 시 참고하여야 할 사안은 별도의 문서로 통지하고 ○○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요구 하고자 합니다.

[표 1] 상반기 결산감사 외부감사인 의견

제목	주요 내용	후속조치
유형자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처리	자본적지출이 세법규정이 아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별도 문서 통보 (○○처)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계정재 분류	장기간 매각이 성사되지 않고 적극적 매각 노력 없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분완료 용역수익에 대한 진행률 인식	측량용역 진행도에 따라 수입이 인식 되도록 관리 필요	별도 문서 통보 (○○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평가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에 따라 금융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ERP 개선필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보통예금 계좌의 과다 보유에 따른 관리	부정예방 차원에서 휴면계좌 해지 또는 통합관리 필요	별도 문서 통보 (○○처)
금융기관 은행조회를 위한 기말 지사 예금잔액 일원화 관리	금융기관 조회서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해 기말 예금잔액의 본부 집중화 필요	별도 문서 통보 (○○처)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천원, 명]

구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현지 처분	제도 개선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고발			
건수	2	1		1									
금액	-												

### 3. 지적사항 요약

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재분류에 대한 사항{통보}

최초 계정분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매각가격의 조정 등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매각예정비 유동자산으로의 계정분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분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매각가능성이 낮은 회원권 646,790,888원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함

② 금융자산 평가를 위한 ERP 시스템 개선{개선요구}

2018 회계연도 결산부터 금융자산에 편입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따라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액과의 차이를 금융자산에 직접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어떤 금융상품을 편입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현재의 ERP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행정상 조치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2017-52	○○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재분류에 대한 사항	통보			1개월	○○실 회계법인
2017-53	○○처	금융자산 평가방법 개선	개선			2개월	"

□ 행정상 조치 : 2건 <통보, 개선>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 목	처 분 내 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① “해당사항 없음”					

### 2.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일련 번호	제 목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조치 사항	금액	인원	감사자
1	“해당사항 없음”					

## V. 기타사항

### 1. 향후 처리계획

- 관련부서에 외부회계감사인 의견 및 처분요구사항 통지

### 2. 붙 임

-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부. 끝.

일련번호	2017 - 52	감사자	○○실 3인 ○○회계법인 4인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 ○○처	처분요구일자	2017. 9.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재분류에 대한 사항

관 계 기 관 ○○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확정측량업무의 수수료를 대신하여 수입한 회원권의 매각을 2014. 7. 4. 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매각 예정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회원권 현황

(금액단위: 원)

구분	취득일	장부상 잔액	최초 매각추진일	매각예정가격	비고
디오션리조트	2012. 4. 13.	287,200,088	2014. 7. 7.	203,500,000	매각예정가격 불변
거제 대명리조트	2013. 9. 27.	359,590,800	2014. 7. 4.	382,000,00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6문단과 7문단은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서 8문단은 경영진이 확약한 매각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고 계정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의 충족이 예상되며 현행 공정



가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준서 부록 B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후 최초 1년 동안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극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여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매각예정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각가격의 조정등 회원권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최초 계정분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회원권이 매각되지 않았더라도 매각예정비 유동자산으로의 계정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는 최초 매각공고를 게시한 2014. 7. 4. 부터 현재까지 회원권 매각이 성사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각예정가격의 조정 등 회원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오션리조트 등 회원권 2건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회원권 646,790,888원은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장(○○처장)은 장기간 매각이 성사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각예정가격 조정 등 매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회원권 646,790,888원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으로 계정 재분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7 - 53	감사자	○○실 3인 ○○회계법인 4인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 ○○처	처분요구일자	2017. 9.	회신기일	2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개 선 요 구

제 목 금융자산 평가방법 개선

관 계 기 관 ○○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결산시점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MMT·MMF예금<sup>1)</sup>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장부금액과 금융기관의 평가금액의 차이를 미수수익으로<sup>2)</sup> 계상하고 있다.

[표] 2017. 6. 3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명세

(금액단위: 원)

금융상품 종류	장부가액	구성비율
보통예금	11,266,587,130	4.69%
기업자유예금	8,562,552,133	3.56%
정기예금	205,000,000,000	85.27%
MMDA, MMT, MMF 등	15,588,169,467	6.48%
합 계	240,417,308,730	100%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는

1) MMF: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  
MMT: 콜론등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초단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상품  
2) (차) 미수이자 XXX / (대) 이자수익 XXX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고 만기 시 회수되는 금액의 원리금 변동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거나, 수익증권등과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익분배를 하며 교체매매·재투자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투자 원금과 평가금액과의 차이를 금융자산에<sup>3)</sup> 직접반영하고 그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 회계연도부터 공사가 보유중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평가금액과의 차이를 금융자산에 직접 반영해야 하며

어떤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가에 따라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동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보다 상세하게 구분해야 공정가치 평가 시 금융상품에 직접 반영할 정확할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사의 금융상품 관리 방식으로는 어떠한 자산이 편입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 원본에 직접 반영할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금융자산이 어떤 상품을 편입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ERP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장(○○처장)은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X / (대) 이자수익 XXXX